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6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임이자·안상훈·유용원

김위상 • 조지연 • 김용태

우재준 • 박성훈 • 김기현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으로 의류가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고, 의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폐수,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에 따라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판매 의류제품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의류 재고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 ①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이하 "의류 재고품"이라 한다)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 매출 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 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 2.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량 및 소각량
 - 3. 그 밖에 의류 재고품의 관리계획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의류 재고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20조의2(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 ①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이하 "의류 재고품"이라 한다)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의류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의류의 종류 및매출액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이용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 환경부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의류 재고품의 종류별 발생량
	3. 그 밖에 의류 재고품의 관리 계획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2. (생략)

③ (생 략)

<u>사항</u>

제52조(과태료)	1	(현행과	같음)
-----------	---	------	-----

- _____
- -----.
- 1.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의류 재고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자
-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